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○ **관련 법령**

-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·제33조
- 산안법 시행령 제40조 2항
- 산안법 시행규칙 제28조, 제33조, 제34조
-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 제13조의2 부터 13조의8

○ **제도시행 : '12.1.26**

○ **건설현장 의무적용('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)**

대상 건설공사 규모	적용 기준일	비고
1,000억원 이상	2012년 6월 1일	※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※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)
500억원 이상~1000억원 미만	2012년12월 1일	
120억원 이상~500억원 미만	2013년 6월 1일	
20억원 이상~120억원 미만	2013년12월 1일	
3억원 이상~20억원 미만	2014년 6월 1일	
3억원 미만	2014년12월 1일	

○ **교육실시기관 : '12.1.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**

☞ 교육기관 보러가기 : 안전보건교육포털(<http://www.koshats.or.kr>) >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> 교육안내 > "교육기관찾기" 선택

○ 의무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
-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-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 - ※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
○ 교육대상 :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(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)

○ 교육내용 및 시간

구 분	교육내용	시 간
공통	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(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)	1시간
	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	
교육대상별	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(재해사례 및 예방대책)	2시간
	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	1시간

※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·가상실습 포함

○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



○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

-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안내

○ 건설기초교육기관 등록 신청 절차



○ 등록신청 가능기관

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

② 산업안전·보건관련 학과가 있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※ 고등교육법 제2조(학교의 종류)에 따른 학교 : 1. 대학, 2. 산업대학, 3. 교육대학, 4. 전문대학, 5.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, 6. 기술대학, 7. 각종학교

○ 인력·시설·장비 등 구비 기준

※ 건설업 기초안전·보건교육 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,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·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.

① 인력기준 (총 3명 이상)

–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

-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(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)·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,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
-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
-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5급 이상 공무원, 산업안전·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·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(건설안전 및 산업보건·위생분야별로 각 1명 이상)

-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(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)·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,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
-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-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-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,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
- 건설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-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·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(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·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(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
② 시설·장비기준

- 사무실 : (바닥) 면적기준 30m²
- 강의실 : (바닥) 면적기준 120m² 이상
- 책상, 의자, 빔프로젝터, 음향시설, 시청각 또는 체험·가상실습 장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과 방음·채광·환기 및 냉난방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어 것
- ※ 「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」(고시)에 따라 교육이수자에게 이수증(카드)을 발급할 수 있는 (카드)발급기를 구비하여야 함.
- ※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,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

○ 등록 진행절차

구 분	업무흐름(처리기한 : 30일 이내)	
등록신청서 접수	교육기관	▶ 공단(지역본부)
교육기관 실사	공단(본부 또는 일선기관)	▶ 등록신청 교육기관
등록 승인 요청	공단(본부)	▶ 고용노동부
등록 승인	고용노동부	▶ 공단(본부)
등록증 발급	공단(본부)	▶ 교육기관

○ 등록신청 기간 : 2012. 1. 26 ~ 연중 수시 접수

○ 신청 시 구비서류

- 신청서 1부(붙임 1) 양식에 따라 작성(공문에 첨부 요함)
- 건설업기초교육기관등록 인력·시설·장비기준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, 붙임2 참조)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※ 증빙서류

- ① 제출공문, 법인등기부등본
- ② 인력 : 재직증명서,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(고용보험 필수), 국가기술 자격증사본, 졸업(학위)증명서류(학력증빙 관련자에 한함), 근로계약서, 경력증명서류(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)
- ③ 겸직여부 확인서류(안전진단, 재해예방기술지도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등록기관인 경우 최종 고용노동청 신고서류 사본으로 교육기관 등록인력과 겸직 없음 증빙서류 제출)
- ④ 사무실, 강의실 : 일반건축물관리대장(갑, 소유자기재) 및 해당시설 면적증빙(실측)자료, 임대차계약서(임차시설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등록신청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)
 ▶ 사무실과 강의실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.
- ⑤ 교육용 비품 : 교육용 기자재 명세서

○ 접수처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개 광역본부 교육센터

- 방문접수는 09:00~18:00까지, 우편접수는 등기접수
- 광역본부 교육센터 소재지 : 서울, 인천,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

○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시 참고사항

- 관련 법령 및 교육규정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(☎ 052-703-0716)에 문의

○ 등록 후 교육업무 수행기준

구분	수행기준
교육편성	50명 이내로 교육인원 편성
교육강사	교육기관 등록인력(강사)으로 강의전담(위촉, 초빙강사 활용 불가)
강의실	등록된 강의실 또는 현장내 전용교육장 (60㎡~120㎡ 이상으로 방문교육 요청한 경우에 한 함)
교육계획 게시(등록)	교육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계획을 자체 홈페이지 및 공단의 기초교육관리 전산프로그램에 게시
이수자 관리	교육 이수자 정보(사진포함)를 공단의 건설기초교육 전산프로그램에 등록
이수증 발급	교육 완료 후 이수자에게 즉시 이수증(카드)발급
이수증 재발급	이수증 훼손 또는 분실한 교육이수자의 요청 시 재발급
교재사용	교육기관 자체 교육교재 개발, 제작, 활용 (단, 초기에는 공단에서 교재 제작·보급 예정)
교육기관점검	공단에서 수행하는 수시 또는 정기점검에 협조(평가에 반영)
교육기관평가	매년 교육기관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(관보, 인터넷 등)

※ 허위 등록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수강생 관리 및 교육내용·시간 등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, 등록취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

[붙임 1]
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

건설업 기초안전·보건교육기관 []등록 []변경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명		전화번호	
	소재지			
	대표자 성명			
변경사항 (등록사항 변경시 작성)	변경 전		변경 후	
	변경 사유 발생일			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등록신청하는 경우	1. 영 제40조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.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),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.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·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·장비 명세서	수수료 없음
	등록변경하는 경우	1.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. 등록증	
공단 확인사항	1.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. 법인등기사항 증명서(법인만 해당한다) 3. 사업자등록증(개인만 해당한다)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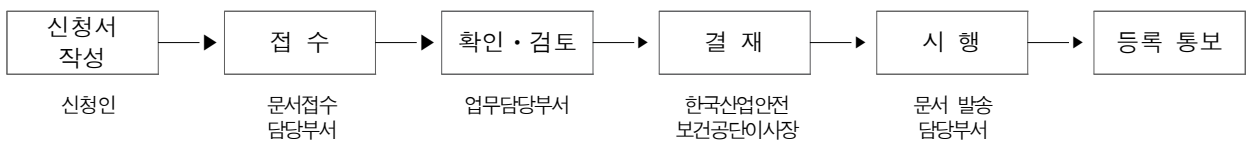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[붙임 2]
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11]<개정 2020.01.15.>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·시설 및 장비 기준(제40조제2항 관련)

1. 기본사항

- 가.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,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나.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·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2. 인력기준

- 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
 - 1)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(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)·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,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
 - 2)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
 - 3)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4) 5급 이상 공무원, 산업안전·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업전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·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
-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(건설안전 및 산업보건·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)

- 1)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(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)·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,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
- 2)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- 3)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- 4)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,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
- 5) 건설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- 6)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 건설기술인
- 7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·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(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- 8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·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(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
3. 시설 및 장비 기준

- 가. 사무실: 연면적 30m²
- 나. 강의실: 연면적 120m²이고, 의자, 책상, 빔 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과 방음·채광·환기 및 냉난방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는 것